

#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2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봉양순·이준형·이병도·서윤기·  
송정빈·안광석·전석기·김달호·  
장인홍·전병주·김수규·최 선·  
임종국·고병국·송아량·김생환·  
박기재·김춘례·김혜련·박기열·  
이영실·한기영·김화숙·권수정·  
박상구·김기덕·이현찬·경만선·  
우형찬·채유미·김태호·홍성룡·  
최기찬·정진철·김경우·권영희·  
이경선·강동길·김 경·박순규·  
추승우·정지권·오현정·이정인·  
김호평·김용연·성흠제·김동식·  
김경영·김재형·임만균 의원(51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중심의 조례로서, 미성년자를 친권의 공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와 같은 자의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고,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학대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노인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 마련 및 성년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하고, 조례명 등을 공공후견제도로 전부 개정하여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년 후견제도 중심의 후견제도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기존의 공공후견제도의 성격으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전부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을 구분하여 공공후견제도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후견’,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3조)
- 다.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공공후견제도의 지원대상과 이용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0조 신설)
- 바.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의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과 종사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후견제도는 공공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최대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미성년자에 대한 공공후견은 미성년자 복리 증진의 관점에서 성장 단계를 고려한 보호·교양 및 양육이 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견”이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

2. “공공후견제도”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후견인의 보호·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자로서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과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주요 보건·복지·가족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후견제도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후견제도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 평가 등
3.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5. 공공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후견제도의 운영 실태 및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대상)** ①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5. 「민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이 필요한 미성년자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공공후견 제도의 이용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후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양성·보수 교육 및 후보군 모집·관리 사업
2. 공공후견인 자조모임 활동 지원 사업
3. 공공후견업무 담당자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후견심판 청구절차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
5. 공공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
6.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관련 법률상담 사업
7.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8.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후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공공후견제도 업무 관련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 자치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후견제도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참여 보장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공공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실태조사), 제9조(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 사업 등) 제1항 제8호, 제10조(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의 신설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비용,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비용 발생
- 서울특별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제6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참여 보장 및 정보제공), 제13조(비밀준수) 등의 신설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91,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91,000천원으로 연평균 58,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 미반영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실태조사 비용은 서울시 보건복지 소관 실국 예산 중 유사사업 단가 준용하여 30,000천원으로 가정
- ※ 참고) 실태조사 단가(2018년, 2019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
- 아동종합실태조사 30,000천원(2019년)
  - 청소년실태조사 30,000천원(2018년)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500천원(2019년)
  - 노숙인실태조사 63,000천원(2019년)
-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은 보건복지 소관 실국 예산 중 유사사업 단가 준용하여 30,000천원으로 가정

※ 참고) 조사·연구 또는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비용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정책방안 연구 30,000천원(2020년 서울시 예산서)

-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2시간 이상 진행) 열리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비용 (조례안 제7조)	30,000	-	30,000	-	30,000	90,000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비용 (조례안 제9조제항제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비용 (조례안 제10조)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소계(b)	70,200	40,200	70,200	40,200	70,200	291,000
□ 총 비용(b-a)		70,200	40,200	70,200	40,200	70,200	291,000

○ 실태조사 비용 ≒ 90,000천원

- 실태조사 비용

$$= \text{지원단가} \times \text{횟수}$$

$$= 30,000,000\text{원} \times 3\text{회}$$

$$= 90,000\text{천원}$$

○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비용 ≒ 15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 연구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사업 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비용

$$= \text{지원단가} \times 1\text{식}$$

$$= 30,000\text{천원}$$

○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비용 ≒ 51,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비용
  - = (참석수당×수당지급 참석인원×개최건수)+(업무추진경비×참석인원×개최건수)
  - = (150,000원×14명×4회)+(30,000원×15명×4회)
  - = 10,200천원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